

예산총칙

제1조 :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72,921,792	11,187,654
1. 일반회계	363,510,847	10,905,325
2. 특별회계	9,410,945	282,328
의료보호기금	835,479	25,064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37,992	61,140
주차장	5,183,897	155,517
주거환경개선사업	230,002	6,9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89,280	17,678
기반시설사업	149,220	4,477
지하수관리	385,075	11,552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07,367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